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 8. 29.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75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생활국장 : 이용달)

가. 제안이유

-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복지분야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4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교육, 자립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위기청소년 및 가족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지원사업, 예방사업 등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운영 및 급식비 지원
- 지역네트워크사업(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 관련 이행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평로144 2층	지상2층 (227.81㎡)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휴게실 등

○ 민간위탁 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간 선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 출 원 가	① 인 건 비 ~ 노 무 비 ~ 보 험 료	기 본 급	498,587,100	58.5	- 2025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 편성 기준 -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 II (여성가족부)	
		연장근무수당	13,698,720	1.6		
		가족수당	3,720,000	0.4		
		정액급식비	16,800,000	2.0		
		교통보조비	15,840,000	1.9		
		자격수당	4,320,000	0.5		
		기말수당	21,746,900	2.6		
	관리업무수당	2,827,390	0.3			
	(명절)상여금(연120%)	33,267,720	3.9			
	퇴직충당금	46,781,570	5.5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19,575,600	2.3		
		국민연금보험료	24,849,240	2.9		
		고용보험료	7,154,880	0.8		
		산재보험료	3,600,000	0.4		
		장기요양보험	2,535,000	0.3		
	소 계		715,304,120	83.9		
	② 운 영 비 ~ 경 비 ~ 소 계	여비(국내/국외)	1,960,000	0.2		- 2025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 기준
우편통신비		1,288,000	0.2			
공공운영비		9,800,000	1.1			
사무관리비		10,452,000	1.2			
맞춤형 복지		1,900,000	0.2			
업무추진비		1,800,000	0.2			
공공요금 및 제세		960,000	0.1			
기 타 경 비		3,000,000	0.4			
소 계		31,160,000	3.6			
③ 사 업 비		106,152,000	12.5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㉑=①+②+③)		852,616,120	100			
수 입 원 가	④ 입장료·이용료	0	0	-		
	⑤ 사용료	0	0	- 청소년기본법 제7조에 의거 무상 사용		
	⑥ 기타수입	0	0	-		
수입원가 합계(㉒=④+⑤+⑥)		0	0			
위탁비용(㉑-㉒)		852,616,120				

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4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④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을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동의안 제출 배경

- 본 동의안은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 12. 31.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5조(승인 및 동의)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민간위탁 조례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동의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적정”으로 제출됨.

II. 주요 사항의 검토.

-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

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임.

-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가능하며, 민간위탁 여부는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수행의 효과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임.
- 위탁하려는 사무의 내용은 ▶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위기청소년 및 가족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지원사업, 예방사업 등,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5년(2026. 1. 1 ~ 2030. 12. 31.)으로 제출되었음.
- 한편,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성과평가)에 따라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는 2025. 7. 10. 관련 평가가 있었고, 평가 결과 87.5점으로 75점 이상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참고로, 2025년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지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여부,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2025년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지 조사 결과	
세부 지적내용	조치 사항
예산서 제출 시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 누락	주의
결산서 제출 시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 누락	주의
결산서 상 필수 첨부서류인 감사보고서 누락	주의

(자료: 가족정책과)

III. 종합의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교육, 자립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임. 이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관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체적·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청소년기의 복합적인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밑바탕 되어야

할 것임. 또한 그동안의 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끝.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75
----------	-----

제출년월일 : 2025. 8. 1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가족정책과

1. 제안이유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복지분야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4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 필요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교육, 자립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 전문가 인력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민간 조직망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위기청소년 및 가족 심리상담 및 검사, 치료지원사업, 예방사업 등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운영 및 급식비 지원
- 지역네트워크사업(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중대재해예방 관련 이행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평로144 2층	지상2층 (227.81㎡)	상담실, 교육실, 사무실, 휴게실 등

○ 위 치 도

		
	<table border="1"> <tr> <td>사진설명</td> <td>외부 전경</td> </tr> </table>	사진설명
사진설명	외부 전경	
<p>지역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서동에 위치 - 지하철 3호선 일원역 도보 3분 거리 - 간선·지선·시외버스 다수 정류장 인접 - 인근에 병원, 복지관, 은행 등 생활 기반 시설 다수 존재 		
	<table border="1"> <tr> <td>사진설명</td> <td>교육실</td> </tr> </table>	사진설명
사진설명	교육실	

마. 민간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를 통한 적격 수탁기관 선정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852,617천원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산 출 근 거	
지출원가	① 인건비	제수당	기본급	498,587,100	58.5	- 2025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 편성 기준 - 2025년 청소년사업안내 II (여성가족부) - 2025년도 서울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 기준
			연장근무수당	13,698,720	1.6	
			가족수당	3,720,000	0.4	
			정액급식비	16,800,000	2.0	
			교통보조비	15,840,000	1.9	
			자격수당	4,320,000	0.5	
			기말수당	21,746,900	2.6	
	노무비	보험료	관리업무수당	2,827,390	0.3	
			(명절)상여금(연120%)	33,267,720	3.9	
			퇴직충당금	46,781,570	5.5	
			국민건강보험료	19,575,600	2.3	
			국민연금보험료	24,849,240	2.9	
			고용보험료	7,154,880	0.8	
			산재보험료	3,600,000	0.4	
장기요양보험	2,535,000	0.3				
소 계			715,304,120	83.9		
② 운영비	경비	여비(국내/국외)	1,960,000	0.2		
		우편통신비	1,288,000	0.2		
		공공운영비	9,800,000	1.1		
		사무관리비	10,452,000	1.2		
		맞춤형 복지	1,900,000	0.2		
		업무추진비	1,800,000	0.2		
		공공요금 및 제세	960,000	0.1		
		기 타 경 비	3,000,000	0.4		
소 계			31,160,000	3.6		
③ 사업비			106,152,000	12.5	- 비목별 기초계산서 참조	
지출원가 합계(A=①+②+③)			852,616,120	100		
수입원가	④ 입장료·이용료		0	0	-	
	⑤ 사용료		0	0	- 청소년기본법 제57조에 의거 무상 사용	
	⑥ 기타수입		0	0	-	
수입원가 합계(B=④+⑤+⑥)			0	0		
위탁비용(A-B)			852,616,120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4항(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운영)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④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②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학교법인을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호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작성자 : 가족정책과 아동친화청소년팀 행정7급 김수정 (☎ 02-3423-5846)